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9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유영하·김현정·김병기

김남근 • 김재섭 • 강민국

김상훈 • 이정문 • 이헌승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 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법률 제 호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를"을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소비자를"로,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를 "있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표시·광고 행위"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련 자료"를 "실증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제출기간을 연장"을 "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표시·광고행위를 하기 전에 실증 관련 자료(이하 "실증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표시·광고행위로 추정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상당한 기한 내에"를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 까지"로, "1일당 200만원"을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서 제1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중 "공무원, 제16조의2"를 "공무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 제16조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송달,"로,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를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6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07조까지를"로 한다.

제4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중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 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금지) ① <u>다음 각</u>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호의 행위로서 소비자를
못 알게 할 우려가 <u>있는 표시</u>	
<u>· 광고 행위로서</u> 공정한 거래	<u></u>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u>다음</u>	
<u>각 호의 행위</u> 를 하거나 다른	<u>· 광고 행위</u>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게 [조 / 교 지 . 과 그 네 요 이 시 지 .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세0소(묘시 영고 대중의 결정
(제5조(표시·광고 대용의 결동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표시·광고행위를 하기 전에 실증 관련 자료(이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표시·광고행위를 하기 전에 실증 관련 자료(이하 "실증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여

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 당 사업자등에게 <u>관련 자료</u>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

실증자료
<u>④</u> 제3항
그 제
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연장
⑤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
조제1항을 위반한 표시・광고
행위로 추정한다.
<u>⑥</u>
<u>제</u> 4항

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 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 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 이 <u>상당한 기한 내에</u> 동의의결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 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u>1일당 200만원</u>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u>⑦</u>
<u>제3항</u>
<u>제4항</u>
.
∥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u>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u>
<u>까지</u>
<u>이 행기</u>
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
<u>원</u>

② (생략)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② (생략)

<신 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서 제1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 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비밀역	검수의 의두	<u>'</u>)
공무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참여	여하거나 :	참여하였던
사람, 제16	<u> 조의2</u>	

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 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 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 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 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 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 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 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 다.

- ② (생 략)
-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69조
 까지, 제93조 및 제95조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
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u>제96조부터 제98조까지,</u>
제98조의2, 제98조의3
<u> </u>
 ② (현행과 같음)
③
$ \omega $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제107조까지를</u>

제16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

<신 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u>제5조제3항</u>을 위반하여 실증 2. <u>제5조제4항</u>-----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0]	제10	조제3항	·에 1	따라	준용
되-	는「될	투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	12조	제1항
에	따른	비밀유	지명	령을	위반
한	자				

- 2.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 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비밀유 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1. (현행과 같음)

3. <u>제5조제5항</u> 을	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 행위를	를 중지하지	아니
한 경우		

4. ~ 7. (생 략)

③ ~ ⑤ (생 략)

3.	제5조	제7항-	 	
-			 	
_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